

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현옥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47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5. 23.

발의자 : 현옥순, 박은경, 김유숙,
유재수, 김진숙, 이대구,
최진호, 설호영의원 (8인)

1. 제안이유

- 상임위원회의 업무 성격에 따라 집행부의 소관 부서를 재정비함
으로써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 (안 제3조제2항)
 - 산업지원본부 : (현행) 문화복지위원회 → (개정안) 도시환경위원회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2

5. 현행조례 : 붙임 3

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※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'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' 생략

【붙임1】 개정 조례안

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라목 중 “세무2과”를 “세무2과)”로 하고,
같은 항 제3호나목 중 “대부해양본부, 산업지원본부”를 “대부해양본부”로 하며,
같은 항 제4호나목 중 “상하수도사업소”를 “산업지원본부, 상하수도사업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지방의회의원 총선거”를 “지방의회의원 선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현 옥순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76)

【붙임2】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 략)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기획행정위원회 가. ~ 다. (생 략) 라. 구청(행정지원과, 민원봉사과, 세무과, 세무1과, <u>세무2과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) 3. 문화복지위원회 가. (생 략) 나. 상록수보건소, 단원보건소, <u>대부 해양본부, 산업지원본부, 외국인 주민지원본부, 중앙도서관, 감골 도서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. (생 략) 4. 도시환경위원회 가. (생 략) 나. <u>상하수도사업소, 차량등록사업소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. (생 략)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----- <u>세무2과</u> ----- 3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<u>대부 해양본부</u> ----- 4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산업지원본부, 상하수도사업소</u> ----- 다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<u>지방의회의원 총선거</u>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 ② (생 략)	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 <u>지방의회의원 선거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
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9-477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. 6. 19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‘지방의회의원 선거’를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 및 제57조, 「안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3조제2항에서 표기하고 있는 ‘지방의회의원 총선거’로 수정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“지방의회의원 선거”를 “지방의회의원 총선거”로 수정
(안 제5조제1항)

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“**지방의회의원 선거**”를 “**지방의회의원 총선거**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<u>지방의회의원 총선거</u>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 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	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. <u>지방의회의원 선거</u> ----- ----- -----. -----.	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. <u>지방의회의원 총선거</u> -- ----- -----.